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3일, 김종민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6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종민의원)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이에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위탁기업의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¹⁾

1) 위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수탁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분쟁조정(제28조),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 부과(제28조의2) 등의 조치

개정안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 대해서도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계약체결 이전 시점부터 이미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는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인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 501개사 중 17개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가 64.7%로 나타났고, 2023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아이디어 탈취피해를 경험했던 중소기업 14개사는 탈취시점으로 사업제안(48.8%), 거래과정(39.9%), 사업공모(37.6%), 사업입찰(29.8%) 순으로 답변(복수응답)하였음.

또한 동 개정안은 최종 계약체결을 전제로 위탁기업의 계약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22년 1월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²⁾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모두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

를 취할 수 있음.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